

수입식품 온라인 정책 설명회

2020. 5. 27.







글로벌 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2020. 5. 27.





수입식품 안전관리 변화

' 13.3

정부조직개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수입검사가식약처로 일원화 (식품등 -식약청, 축산물-농식품부, 수산물-해수부)

' 16.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 · 시행

- 해외현지실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소비단계까지 3중 안전관리

17.3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신설

- 수입식품정책과, 현지실사과,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 통관 중심의 수입검사 업무에서 수입 전 후 단계 관리체계 마련

' 18~' 19 수입신고보류제 도입 (감염병 등 중대한 위해발생시) 안전성 입증 제품, 계획수입 신속통관제 도입 현지실사 기피,방해, 무응답 시 수입중단조치



2020년 수입식품 주요 정책방향

"국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혁신

글로벌 정책 환경을 주도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입식품 전(**全**) 주기 안전관리 강화

- 4차산업기술기반수입식품전(全)주기 안전관리
- 수입김치HACCP적용및 국내유통관리강화
- 위해도중심선택과집중의수입검사
- 유통중수입식품안전관리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영유이용 특수용도식품 해외제조업소 점검강화
- 해외직구식품안전관리 강화
- 일본산식품등방사능안전관리로 국민오심확보

국민 소통 내실화 및 전문성·역량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수입식품 정책 추진
- 수압식품검사관전문역량강화
- 수요자중심의스마트수입식품정보 서비스제공

혁신성장 지원 및 국제협력 확대

- 신통상규범발효대비수입식품인전관리 체계전화
- 수출국위생관리책임강화를위해국가간 협약확대
- 축산물수출단계별맞춤형지원
- 해외제조업소등록정보신뢰성제고

수입식품법(현지실사) 개정사항

수입중단(해제)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19.12.3. 개정·공포)

- ☑ 해외제조업소가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 정보 공개 근거 마련
- ☑ 수입중단(해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식품안전나라), 국민 알권리 보장 (*20.6.4. 시행)

수입식품 HACCP 의무화 (20.4.7. 개정·공포)

- □ 국내식품과 동등하게 해외제조업소 수입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폐지)
 - * 국내 생산 제품과 동등하게 수입식품 생산,가공 과정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 도입 추진
- ☑ 수입 김치 HACCP 의무화 추진 :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 적용 (☆21.7.1 시행)



수입식품법(현지실사) 개정사항

수입식품 HACCP 의무화 세부내용

- ✓ 해외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다만 수출국 정부와 별도로 혐의 후 고시한 경우 인증기준으로 간주
- ✓ 인증의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 평가
- ✓ 인증요건, 인증절차, 인증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 예정
- ✓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김치부터 추진)은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만 수입 가능

1단계 (21년)	수입 김치 전년도 연 수입량 5,000톤 이상 제조업소
2단계 (22년)	수입 김치 전년도 연 수입량 1,000톤 이상 제조업소
3단계 (23년)	수입김치 전년도 연 수입량 100톤 이상 제조업소
4단계 (24년)	수입김치 모든 제조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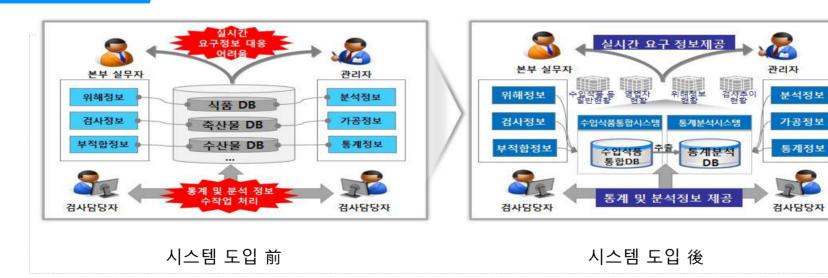
수입식품법(통관단계)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20.4.7 개정·공포)



☑ 문제 식품을 효과적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위해정보, 현지실사, 통관 및 유통단계 부적합, 행정처분 등 각종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로 종합적 분석 * 수출국 현지부터 유통단계까지 수입식품 식품각 단계별 안전관리 업무 효율적 수행

'수입식품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20.10.8 시행)



수입식품법 시행규칙(현지실사) 개정사항 ('20.3.31 개정)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기준 완화

☑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성분 배합비율 변경 시 예외없이 변경등록☑ (개선)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된 원료 성분의 배합비율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부적합식품 반송·폐기 기간 명확화

- (현행)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고시)」 제11조에 따라 1년 이내 이행 (개선)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송 · 폐기 조치
 - * 1년 이내 반송.폐기 하지 않은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되어 1년간 정밀검사를 받게 됨

수입신고서 유의사항 추가

- ☑ (신설) 동일한 재질의 기구 ·용기 · 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
 - * 단, 한가지 색상이라도 기준 ·규격 부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되지 않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유통단계) 개정사항 ('20.3.31 개정)

통관단계 부적합 관련 기통관 제품 신속 자율회수

- ☑ (현행) 통관 단계 부적합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기 수입통관된 제품
 → 수거 검사 후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 실시
 (개선) 영업자가 회수계획(자율회수) 보고한 경우 수거 검사 등 생략
- → 다만, 자율 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수거 검사 및 행정제재

식품과 장난감과 구분 포장 (영업자준수사항)

- ☑ (신설) 식품과 장난감을 반드시 구분 포장, 수입신고 하도록 규정 마련 * 국내 제조· 가공식품은 장난감 등 구분 포장하도록 명시
- → 식품 속에 들어있는 장난감으로 섭취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분 포장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안)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의 정보 공개 범위 및 기간 규정 (공개범위) 명칭, 소재지, 제조국·생산국, 수입중단 해제 일자, 중단 해제 사유 (공개기간) 3개월 이상 (공개방식)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 * 수입중단(해제) 조치한 해외제조업소 정보공개 근거 마련(19.12.3 개정 공포, 20.6.4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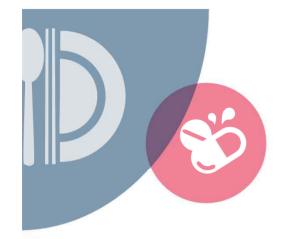
행정처분 기준 개선



더 국내 식품과 동일한 기준규격 위반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과 처분 양향이 다른 경우 동등 수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강화) 식품법과 동일하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양형 개선(영업정지 7일→10일) (신설) 건기법과 동일하게 기능성분 외의 규격을 세분화하여 처분기준 마련

* 중금속 위반(영업정지 15일), 대장균 위반(영업정지 5일), 콜레스테롤, 당 기준 위반(영업정지 3일)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목 차

- 수입 전(前)단계 사전안전관리 제도
- Ⅱ 해외제조업소 등록
- Ⅲ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V 우수수입업소 등록
- VI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수입 전(前)단계 사전 안전관리 제도

식품(수산물 포함)

- ▶ 해외제조업소 등록
-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 해외식품위생평가기관
- ▶ 우수수입업소
- ▶ 해외우수제조업소

축산물

-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 ▶ 해외작업장 등록
- ▶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수입 전(前)단계 사전 안전관리 제도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근 거	목 적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정보
제6조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 [고시] 해외제조업소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및 국내외 위해정보에 대한 확인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8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 [고시] 우수수입업소 ·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신청 또는 사후관리
제11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식약처장이 고시한 축산물의 수입위생조건 이행여부 확인, 등록에 대한 조사 및 확인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및 부칙 제1조)

- ☑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 · 운영자는 수입신고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함
 - 해외제조업소 : 수입식품등(축산물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 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 포함)

☑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수입신고 거부

해외제조업소 등록

해외제3	토업소 []	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변경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Updat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등록갱신신청서 Application for Renewing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y
	영업의 종류 Type of business	[] 식품 또는 식품함가을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ood or food ad ditives [] 기구, 용가포장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apparatus, or contain ers and packages [] 농산물 포장 Packaging agricultural products []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 Manufacturing/processing functional health foods [] 수산물 제조가공(성막 및 양식 포함) Manufacturing/processing fishery products (including vessels and aquaculture)
영업정보 Business In formation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Whether a f ood safety manag ement system app lies to the type of food above, /f applicable	[] 적용 안항 No [] 적용 Yes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업소를 방문하여 접검할 수 있다는 것 에 대한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agrees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 [] 삼기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 The applicant certifies that the above inform ation is true and accurate.
- ☀ 수입자인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로 확인 if "Importer", check the below additionally.
- []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위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등록갱신)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has checked and agreed on the above registration (update of registered information, or renewal of registration)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The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the foreign food facility concerned <u>agrees</u> that if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deems it necessary, he/she may visit and inspect the foreign food facility.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및 부칙 제1조)

-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등록 신청
 - 등록 정보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등록완료(코드번호 부여)

☑ 등록정보는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산품목, HACCP 적용여부 등을 기본항목으로 설정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 식약처장은 위해방지 및 안전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현지실사 거부, **방해, 기피(무응답 포함)** 또는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19.4.23. 수입법 개정)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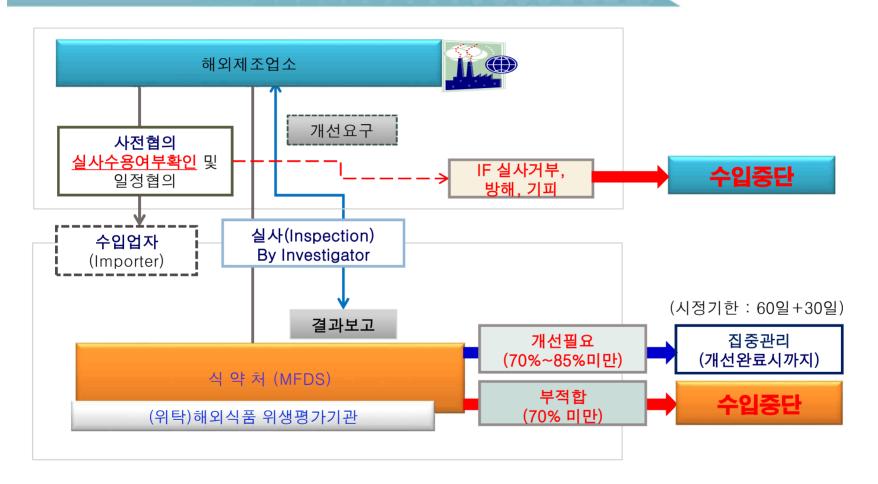
현지실사 통보 및 실사 수용

- ☑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 수출국 정부를 통하거나직접 해외제조업소에 사전통보 → 실사 수용여부 회신
 - 해당업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통보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현지실사 <u>일</u>정 협의

び 해당 업소는 식약처와 협의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일정 조정 가능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수입자)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1차)

등록 기준에 적합하면 식약처에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신청

(식약처)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2차) 실시

적합하면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적용대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절단, 탈피, 건조, 염장, 숙성, 가열, 냉동) 수입업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혜택〉

- 우수수입업소는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 게재(홍보)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도안 표시 등('17.10.31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 〈우수수입업소의 준수사항〉

- 해외제조업소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해야 함
-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
- 1)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품목
- 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준수사항 미이행 경우〉

- ❖ (1차)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3년동안 등록신청 불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

-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 가능
- 영업자 성명,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은 배합비율 포함). 제조 및 가공공정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 〈우수수입업소의 갱신〉

-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부적합 이력, 행정처분 이력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실사 생략 가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식약처에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 신청

(해외제조업소) 식약처장이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

(식약처)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실시

적합하면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

(적용대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절단, 탈피, 건조, 염장, 숙성, 가열, 냉동) 수입업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해외우수제조업소에 대한 우대혜택〉

- 해외우수제조업소는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식약처 홈페이지(식품안전정보포털 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 게재(홍보)
-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도안 표시 등('17.10.31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준수사항〉

- 해외제조업소가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관리해야 함
-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
- 1)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품목
- 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 필요 사항, 점검표 및 관련 증빙자료

〈준수사항 미이행 경우〉

- ❖ (1차)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3년동안 등록신청 불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시 〈해외우수제조업소의 유효기간〉

-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 가능
- 영업자 성명, 우수수입업소(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은 배합비율 포함), 제조 및 가공공정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함

☑ 〈해외우수제조업소의 갱신〉

-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
- 부적합 이력, 행정처분 이력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현지실사 생략 가능

☑ 〈해외우수제조업소의 등록 대신 신청 〉

- 국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대신 신청 가능함
- * 국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지정하여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별지서식) 제출(17.10.31 개정)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8~12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

-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시행규칙 별표 3)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스지에스㈜,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세스코(20.5월 기준)

☑ 〈위탁 업무범위〉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법제6조)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위한 현지실사(법 제7조·제8조)
- 수입 OEM 식품 제조 · 가공업소 위생평가(법 제18조제2항)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 제9조, 제10조, 시행규칙 제8~12조)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요건

- 법인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
- 위생평가 전문 인력(10명 이상) 보유 등
-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은 식품 등의 수출입, 유통, 통관대행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업적 · 재정적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
- * [고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3년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국민과 함께 수입식품 사전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신고시 알아야 할 것들

2020. 5. 27.





목 차 목 차

발표내용

- 통관단계 검사 개요
- II 통관단계 수입신고 검사 절차
- Ⅲ 통관단계 제도 운영





통관단계 검사 개요

단계별 수입식품 관리체계 수입식품 통관 수입식품 검사 조직

단계별 수입식품 관리체계

수입 전 단계

해외작업장 등록 및 현지실사 <u></u>

수출국 작업장 등록제도 도입, 현지실사 등 해외현지 관리

통관단계

3등급(1~3등급) 차등관리

□ 검사실적, 부적합 및 위해정보 등

유통단계

서류·관능 통관식품 우선 수거·검사



□ 유통중인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3중 안전체계

더 촘촘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확립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6.2.4 시행)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물량

우리나라 연간 식품수입액

282억\$

연간 식품수입 증가율

5.4 %



* 2019년 기준 잠정통계

수입식품 통관

수입 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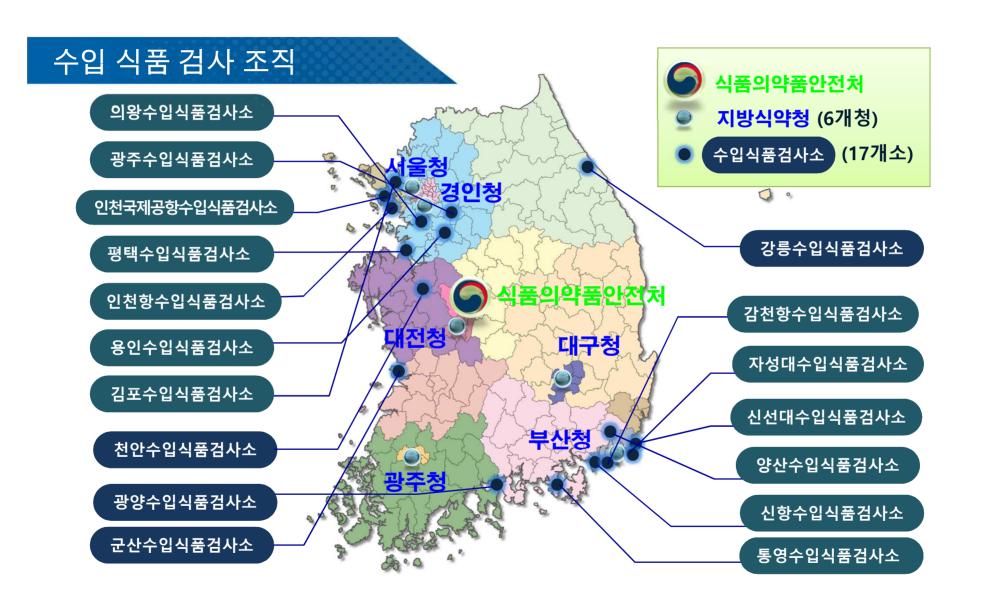
-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
- 관련 법령
 - 관세법, 대외무역법, 주세법 등
 - 〈고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제1항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통관 요건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수출입 요건 구비대상 물품' 특정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 가능
 (관세법 제226조 및 관세청 고시)
 - * 국민보호,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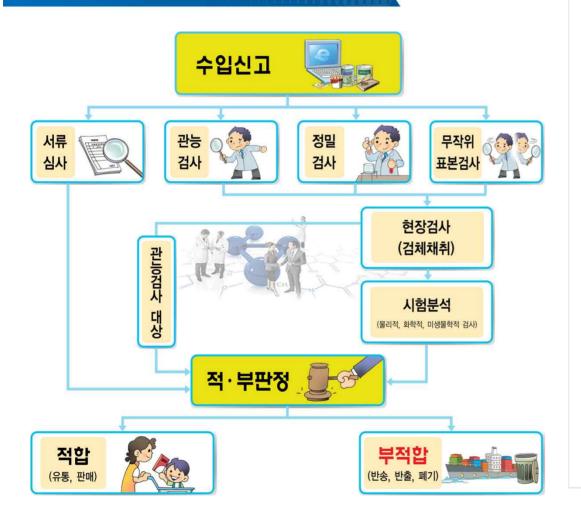


Ⅱ 통관단계 수입신고 검사 절차

수입신고 절차 검사종류 정밀검사 수수료



수입신고 절차



○서류검사 (2일, 축3일)

동일사•동일식품, 자사제조용, 외화획득용 식품 등

○ 현장검사 (3일, 축5일)

정밀검사 받았던 동일한 재수입 식품 등

♥정밀검사(10일, 축18일)

최초 수입식품, 부적합 재수입 식품 등

○ 무작위표본(5일, 축18일)

서류•관능검사 대상 중에서 표본 추출에 의한 식품 등

검사종류

서류검사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 상태,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 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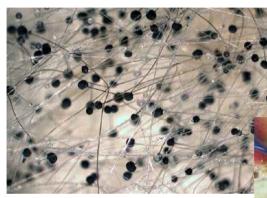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

표본검사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학적 방법에 따른 식약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곰팡이가 핀 것(검은 곰팡이)



설치류 분변



부패된 것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정밀검사수수료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등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외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 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 료를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 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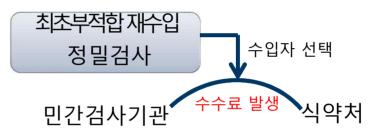
◆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15] 수수료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시험 의뢰규칙」에서정하는 시험수수료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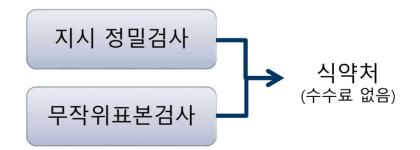


수입식품등 검사기관

● 6개 지방청 및 민간 시험검사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서울),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산지소(부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경기), ㈜한국분석기술연구원(부산) 등



Ⅲ 통관단계 제도 운영

검사명령제 운영 수산물 위생약정

검사명령제 운영

개 요

☑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인체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대상 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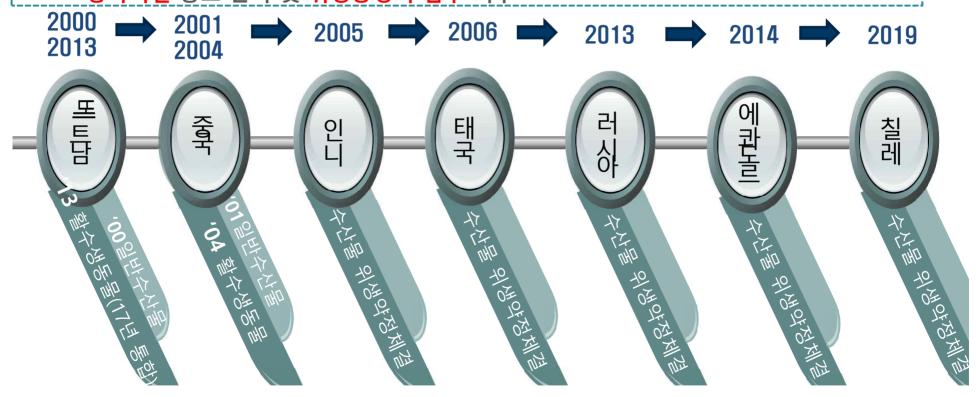
- ☑ 동물용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검출 또는 검출 우려 식품
- ☑ 최근 3년간 수입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 등
- ☑ 기타 국내외 위해발생우려 식품 등

수입신고 절차

- 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실시
- 다 수입신고 시 시험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제출, 미제출시 반려 조치

수산물 위생약정

- ▶ 외국기관과의 기관간 약정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01호,134.15)
 -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 「수산물수출입위생약정」체결
 - 등록시설 통보 관리 및 위생증명서 첨부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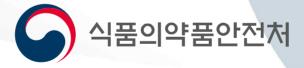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수입 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목차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 l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지도 · 점검 체계
- Ⅱ 유통수입식품수거·검사체계





수입식품 유통단계 안전관리 체계

"안전한 수입식품 제공 환경 조성"

행정처분 및 위해식품 회수

영업자 지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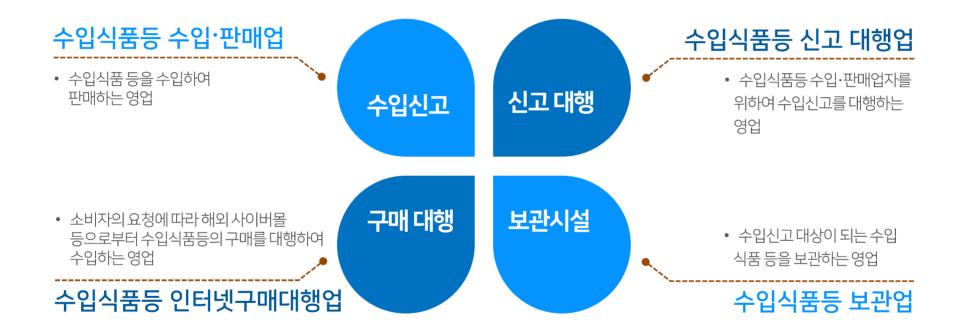
-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 부당표시 광고 행위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유통 수입식품 수거 · 검사

- 국·내외위해정보와 관련된 수입식품
- 특정시기다소비수입식품
- 부적합이력수입식품,장기간 서류통관수입식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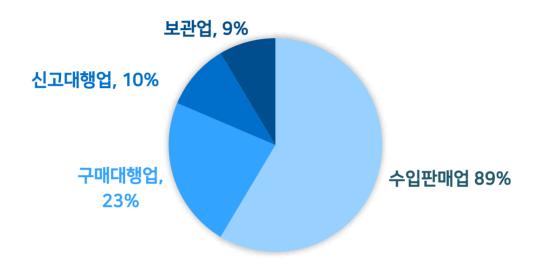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 체계

영업의 종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영업등록 현황(전국)



구분	총계 (누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식품등 보관업
2016년	39,008	37,023	726	581	678
2017년	40,985	38,318	808	1,146	713
2018년	46,129	42,361	910	2,102	756
2019년	50,334	44,621	976	3,972	775

영업자 지도·점검 대상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지도 점검 업무 수행

지도·점검 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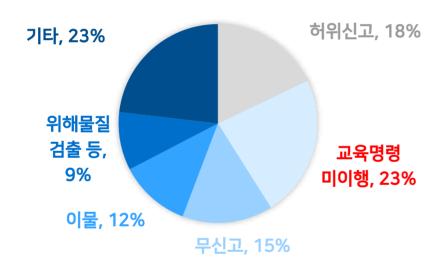
상습적 법 위반업체

최근 3년간 점검이력 없는 수입 상위업체

1399 등 민원제보

2019년 위반현황(총 829건)

사례별 위반현황



허위신고



- 해외제조사명, 소재지 등 허위신고
- 허위서류(정부증명서 등) 제출

교육명령 미이행

• 수거·검사 부적합 등에 따른 교육명령 미이수

무신고

ıllQ

- 무신고 수입행위(구매대행 포함) 적발
- 수입신고 수리 이전 보세구역 반출 등

2019년 위반현황(총 829건)

❖ 업종별 주요 위반 내역

업종	개소	총 위반건수	주요 위반 내역(건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44,621	625	교육명령 미이행(178)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3,972	196	무신고(96)
수입식품 등 신고대행업	976	2	허위신고(1), 종업원 위생교육(1)
수입식품 등 보관업	775	6	변경사항 미신고(3)

주요 무신고 위반사례





ビ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품을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관 통관** 이후 적발

Ш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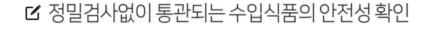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필요성

위해정보 발생



- ☑ 발생가능성이 낮아 수입검사하지 않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정보 수집
- ☑ 신종 유해물질이 발생되었다는 정보 수집 등

서류검사 통관 제품



III Q

유통과정 중 오염



- ☑ 수입업자가 수입식품에 유통기한을 무리하게 설정한 경우
- 비위생적인 보관으로 미생물 번식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필요성

국내외 위해정보 관련 수입식품

- ☑ 해외 위해정보, 통관·유통단계 부적합 제품 정보
- ☑ 해외 제조사 현지실사 부적합 정보
- ☑ 위해우려 이슈가 있는 수입식품 정보 등

특정시기 다소비 수입식품

- ☑ 발렌타인 데이 등 특정시기에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
- ✓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수입량 증가 품목 (예시: 초콜릿류, 건강기능식품 등)



유통 중 위해물질 검출이력 제품

☑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서, 항생물질 등 위해물질 검출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등 (예시: 중국산 마늘종 잔류농약 등)

장기간 서류검사 통관제품

☑ 검사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어 장기간 서류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 (예시: 미국산 체리, 이탈리아 볶은커피 등)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예시)

❖ 위해정보 발생에 따른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 ➤ 검사결과 적합인 경우 잠정판매중단 해제 및 정상 유통
- ➤ 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해당제품 회수·폐기 및 언론 공표

부적합 수입식품 조치

❖ 위해식품 판매차단 및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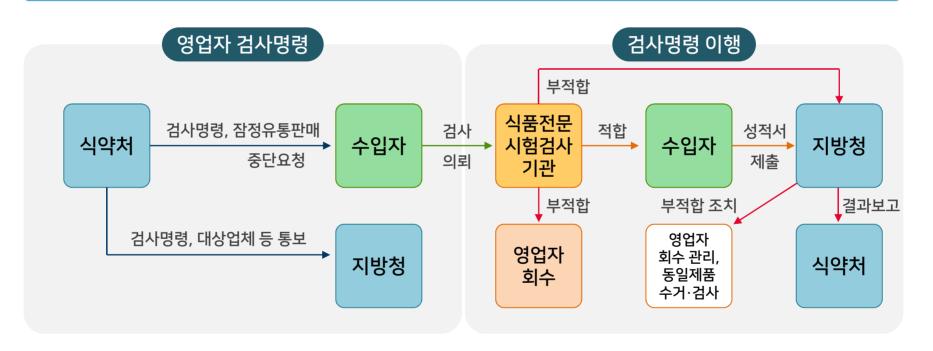
부적합 긴급통보 시스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보도자료 배포(회수 1, 2등급 대상)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회수 사실 공개(회수 1~3등급)

유통단계 검사명령

유통 중인 수입식품을 영업자가 직접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 (대상: 반복적인 위해물질 검출,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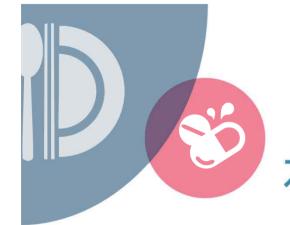


국민과 함께 식품·의약품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능형수입식품검사시스템

「수입식품등 신고서 <mark>사전 진단</mark> 서비스」 운영 소개

2020. 5. 27.(수)





목차

- I '지능형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이란?
- 비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 사전 진단 서비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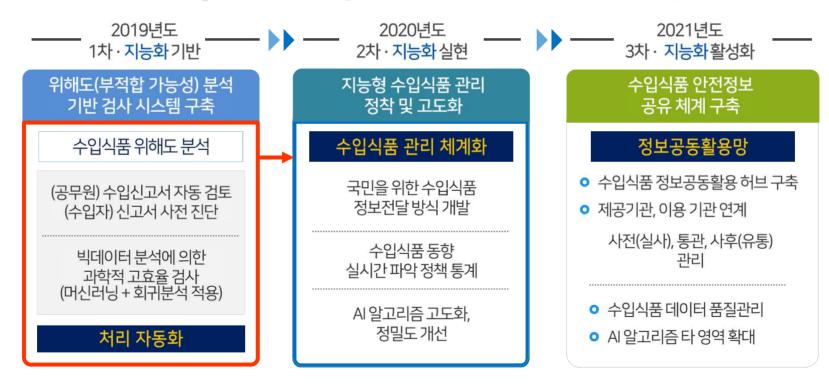
지능형 수입식품검사시스템 왜 만드나요???

- □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입식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 ☞ 수입식품 검사를 위한 공무원과 예산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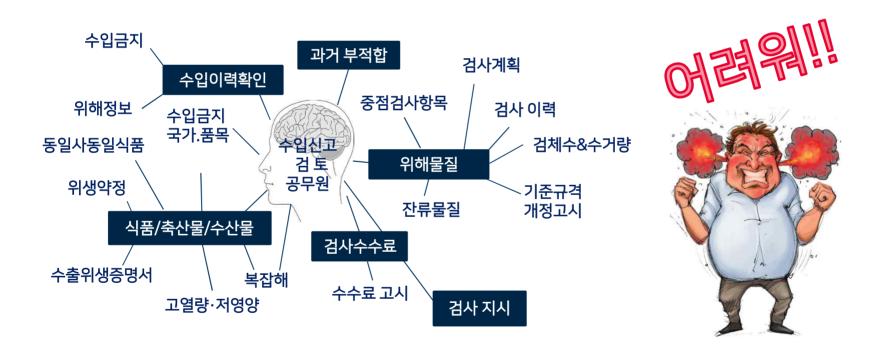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지능형 수입식품검사시스템이 해결책!!

■ 지난 20년 간 축적된 1천만 건 이상의 수입식품 검사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분석법인 머신 러닝을 접목하여 정보기반 수입식품검사 시스템 구축



수입식품등 신고서 사전 진단 서비스는 왜 필요한가요?

■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을 위해 이것 저것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검사하는데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사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확인할 것도 너무 많아요!!!



수입식품등 신고서 사전 진단 서비스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 동일수입식품 수입 여부, 수입 부적합 정보,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중단 정보 등수입 영업자 수입식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 사전점검(22종) 결과 제공

정밀검사 실	비정상 신고 의심 정보	
* 5년 이내 동일제품 최초 정밀검사 실적	* 금액 또는 중량 이상 의심 정보 (예) 평소 100톤 → 1톤 신고 * 제조국가 입력 오류 의심 정보 * 화물 중복 수입신고 의심 정보	
수입검사 관	해외 위해 주의 정보	
* 수입 통관 단계 검사 지시 확인 * 수입검사 기준.규격 신설 또는 강화 확인 * 검사명령 제품정보 및 구비서류 * 우수수입업소 여부 * 해외우수제조업소 여부 * 축산물 해외작업장별 수입 가능 품목 정보 * 수입중단 및 금지 제품 정보	* 수입신고수리 보류 대상 제품 정보 * 유전자 변형식품, 주문자상표부착 식품, 유기식품 구비서류 및 표시사항 *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사항 *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여부 * 식품원료 사용 조건	* 수입신고서 관련 해외 위해 정보 * 수입제품 유해물질 검출 정보 * 과거 부적합 발생 이력 * 해외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제품 정보

수입식품등 신고서 사전 진단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 식약처 인터넷 사이트인 "수입식품정보마루 (impfood.mfds.go.kr)" 에서 하단에 있는 "사전 진단" 그림(링크)을 클릭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사이트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수입영업자는 먼저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